

# 사단법인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이하 본회라 함.)의 수석부회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선출 방법)

(1) 수석부회장은 선출규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항에 따라서 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다만 산업계 인사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선출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의 선출은 총회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제3조 (후보 자격)

(1) 수석부회장의 후보자격은 최소 5년 이상의 평의원으로서 최근 3년간 평의원 회비를 매년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2) 수석부회장의 후보자격은 학계 및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부회장, IMID 실행위원장, IMID 프로그램위원장, JID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중 최소 1개 이상의 직책을 역임하여야 한다. 단, 공동 위원장은 제외함.

(3) 수석부회장의 후보자격은 산업계인 경우에는 부사장급 이상으로 한다.

##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1) 이사회는 해당연도의 2월 28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전연도의 포상위원장으로 한다.

(4)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5조 (위원회 업무)

(1)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 접수, 후보 선정, 투표, 개표, 당선자 공고 및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2) 위원회는 선거운동 일정과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선거공고와 함께 공지한다.

(3)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선거운동 관련 규칙을 후보자와 투표권자에게 공지한다.

## 제6조 (선거공고 및 후보등록)

(1) 위원회는 해당연도 3월 10일까지 선거일정과 수석부회장 후보추천 접수 안내 및 투표권자 명단을 공고한다.

(2) 상기 (1)항의 공고는 평의원들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하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의 발간 일정이 이를 허락할 경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에도 한다. 또한, 본회 홈페이지에도 공고한다.

(3)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 접수는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받는다.

(4) 수석부회장 후보는 평의원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서면 추천에 의해 추천된다. 대표 추천인은 피추천인의 이력서(A4 용지 한 페이지 이내)와 추천인들의 추천 서명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본회에 제출한다.

(5) 추천된 후보는 4월 10일까지 후보수락 의사를 본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아울러 소견서(A4 용지 두 페이지 이내)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후보 접수가 완료된다.

(6) 위원회는 후보로 추천되고 후보수락을 한 평의원의 서류와 절차를 검토하여 허위사실 기재 등 하자가 없으면 후보로 확정하여 해당연도 4월 15일까지 회장에게 통지한다.

(7) 3월 31일까지 추천된 후보가 없거나, 4월 10일까지 후보수락을 한 평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본회 회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회장은 즉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후보를 선정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보는 해당년도 4월 25일까지 상기 (4)항과 (5)항의 이력서 및 소견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선거 방법)

(1) 선거관리위원장은 제6조 (6)항에 따라 회장에게 후보를 통지한 후, 평의원에게 이메일로 후보를 통지하고, 당해년도 5월 5일 이전에 우편으로 투표안내문, 후보(들)의 이력서 및 소견서, 투표용지 및 속봉투, 반송용 봉투를 국내에 거주하는 투표권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상기 임시 이사회는 제6조 (7)항의 이사회가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소집하지 않는다.

(2)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이 명부와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접인하여 투표권자에게 발송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접인한 투표용지만 유효하다.

(3) 투표안내문 및 투표용지에서 후보자들의 나열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한다.

(4) 투표권자는 투표용지에 명시된 후보 중 1인에게 기표하고 반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본회에 반송한다.

(5) 투표는 투표자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6) 투표는 우편으로 받으며, 개시일은 투표안내문 발송일로 하고, 종료일은 해당년도 5월 31일로 한다. 즉, 해당년도 5월 31일까지의 소인분만을 유효로 한다.

#### 제8조 (투표권)

(1) 평의원 중에서 해당년도 3월 31일까지 평의원 회비를 납부한 자만 투표권을 가진다.

(2) 제6조 (1)항에 의해 공표된 투표권자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년도 3월 31일까지 받는다.

#### 제9조 (선거운동)

(1) 각 후보 혹은 각 후보가 정하여 위원회에 사전 통지한 후보별 3인 이내의 지지자들은 정한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동안 평의원회 정견발표와 전자메일, 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3)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상기 (1)~(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또는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10조 (당선자 확정 및 공고)

(1) 투표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즉시 개표를 한다.

(2) 투표용지에 투표자의 신분이 들어나면 무효표로 간주한다.

(3) 반송되어 개표된 투표용지 및 반송용 봉투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여타의 선거 관련 서류와 함께 5년간 학회 사무국에 보관한다.

(4)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동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5)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6) 당선자가 없을 때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추천 또는 재적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피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피추천인을 당선자로 확정하고, 피추천인이 2인 이상이면 이사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이외의 관련 규정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정관과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을 따른다.

(7)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를 즉시 공고하되, 이는 해당년도 6월 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8) 당선자 공고는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회원에게 전자메일로 알린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